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93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 충 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 배경	3
2.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	4
3. 조문별 검토의견	7
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	7
나.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10
다.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교환 범위 확대	15
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산림재난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	19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6. 13.

다. 회 부 일 : 2025. 6.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재난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대응 등을 통하여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경북, 경남 등에 걸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 지역주민, 진화대원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시행 예정인 이 법률에는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이나 산림재난 대응 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관할구역의 현장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산림재난 관련 교육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법률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시행 예정인 법률을 일부 보완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

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조제1항제5호 신설).
-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9조의2 신설).
- 다. 산지 외의 지목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한 토지 매수·교환 범위를 ‘산사태취약지역 산지’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로 확대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6조제1항).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6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 배경

「산림재난방지법」(법률 제20751호)은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관리체제를 통합하고 단일 법체계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산림보호법」에서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에 관한 내용을 분리·이관하고,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및 지침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산림재난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림재난 관리 정책의 종합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31일 제정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음.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산림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인근 산림 및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피해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규모 손실이 초래될 수 있고, 최근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림재난이 확대되고 있으나,¹⁾

재난에 관한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림분야의

1) 2023년 말 기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따른 피해규모는 각각 4,992ha, 459ha, 107만 그루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1.2배, 1.8배 및 1.1배 증가

【산림재난 발생 현황】

산불 피해면적		산사태 피해면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10년평균	'23년	10년평균	'23년	10년평균	'23년
4,004ha	4,992ha	258ha	459ha	96만그루	107만그루

「산림보호법」으로는 복잡 다기화되는 산림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임.²⁾

2.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전인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이하 ‘2025년도 대형산불’)로 인하여 역대 1위³⁾ 규모의 산림피해(103,876ha)와 183명의 인명피해, 1조 818억원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였음.

【 ‘25. 3. 21. ~ 3. 30. 기간 산불 발생 현황 】

구분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경북 안동	경북 영덕	경북 영양	경북 청송	울산 울주 온양	울산 울주 언양
산불발생	3.21(금) 15:28	3.22(토) 11:25	3.22(토) 11:25	3.22(토) 11:25	3.22(토) 11:25	3.22(토) 11:25	3.22(토) 12:12	3.25(화) 11:55
주불진화	3.30.(일) 13:00	3.28.(금) 17:00	3.28.(금) 17:00	3.28.(금) 17:00	3.28.(금) 17:00	3.28.(금) 17:00	3.27.(목) 20:40	3.26.(수) 08:10
산불대응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2단계
산불영향구역	1,858ha	12,821ha	9,896ha	8,050ha	5,070ha	9,320ha	931ha	63ha
산림피해면적	3,397ha	28,853ha	26,709ha	16,208ha	6,864ha	20,655ha	1,117ha	73ha

※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5.3.21.~30.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 2025. 5.

2) 「산림보호법」은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 외에도 산림보호 및 보호구역 지정·관리, 보호수 지정·관리, 입산통제구역 등 산림보호와 관련된 사항, 나무의사, 나무병원 등 수목진료제도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산림재난의 예방·대응사항을 충분히 담아내기에 미흡한 상황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골격을 제시하고 있을 뿐 산림재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1986년 산불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를 기준으로 함

【 2025년도 대형산불 주요 특징 】

❖ 산불 피해규모(198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 산불 규모 역대 1위: 총 103,876ha → (역대 2위) '00년 동해안 산불 23,794ha
- 단일 사군 산불 면적 역대 최대 의성 28,853ha → (중전) '22년 동해안 산불 올진 14,140ha
- 피해액/복구비 역대 최대 1조 818/1조 8,809억원 → (중전) '22년 동해안 산불 2,261/4,170억원

❖ 재난사태 선포 : 산불 4번째

- 1차) '05년 양양 산불, 2차) '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3차) '19년 강원 산불, 4차) '22년 동해안 산불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산불 6번째

- 1차) '00년 산불, 2차) '05년 양양 산불, 3차) '19년 강원 산불,
4차) '22년 동해안 산불, 5차) '23년 4월 산불

'19년 / '22년 / '25년 산불피해규모 비교



※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5.3.21.~30.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 2025. 5.

【 피해 현황 】

※ 특별재난지역 선포 8개 시·군 대상

❖ 인명피해

- 183명(사망 27, 부상 156) ※ 공무원 1, 진화대원 3 미포함

❖ 재산피해

- 1조 818억원(사유시설 5,175, 공공시설 5,643)
 - (사유시설) 주택 3,848동, 농·수산시설 6,106건, 농·산림작물 3,419ha 등
 - (공공시설) 산림 약 104천ha, 국가유산 등 공공시설 769건

※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5.3.21.~30.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 2025. 5.

이에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산림재난방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동 개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참고로, 현재까지 총 26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3. 조문별 검토의견

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이하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② ~ ⑧ (생략)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재난방지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⁵⁾

최근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산림재난방지 인력⁶⁾의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예정법률에는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최근 3년 간 산림재난방지 인력 안전사고 현황 】

(단위: 건)

연도	계	2022	2023	2024
계	65	22	19	24
넘어짐, 부딪힘 등 타박상	35	17	11	7
벌, 독충 등 동물상해	16	1	1	14
교통사고	5	-	4	1
절단·베임	2	1	-	1
기타	7	3	3	1

※ 자료: 산림청

4) 「산림재난방지법」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림재난방지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림재난방지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교육·훈련, 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5) 참고로 산림재난방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인 「산림보호법」은 산림재난별로 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 ② 산불방지장기대책, ③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참고자료 1: 산림재난방지 인력 현황

이에 개정안은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관련 사고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나.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u><신설></u>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9조의2(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산림재난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

현행	개정안
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 (생략)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특별자치시장· <u>특별자치도지사</u>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한정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u>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작성지침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u> <u>④ 그 밖에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특별자치도지사</u>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산불 또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통제단의 단장에게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⁷⁾,

7) 「산림재난방지법」 제33조(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요청)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주민대피를 실시하는 경우 각 재난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 의해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수립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중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등에 따르고 있음.

그러나 2022년부터 현재(2025. 6.)까지 산불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사망)는 총 50명(산불 35명, 산사태 15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림재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주민 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연도별 산불·산사태 인명피해(사망) 현황 】

(단위: 명)

연도	계	2022	2023	2024	2025.6.
계	50	1	16	2	31
산불	35	1	3	-	31
산사태	15	-	13	2	-

※ 자료: 산림청

은 산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 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의 단장에게 같은 법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의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사태 위기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산 통제, 대피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 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의 단장에게 같은 법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의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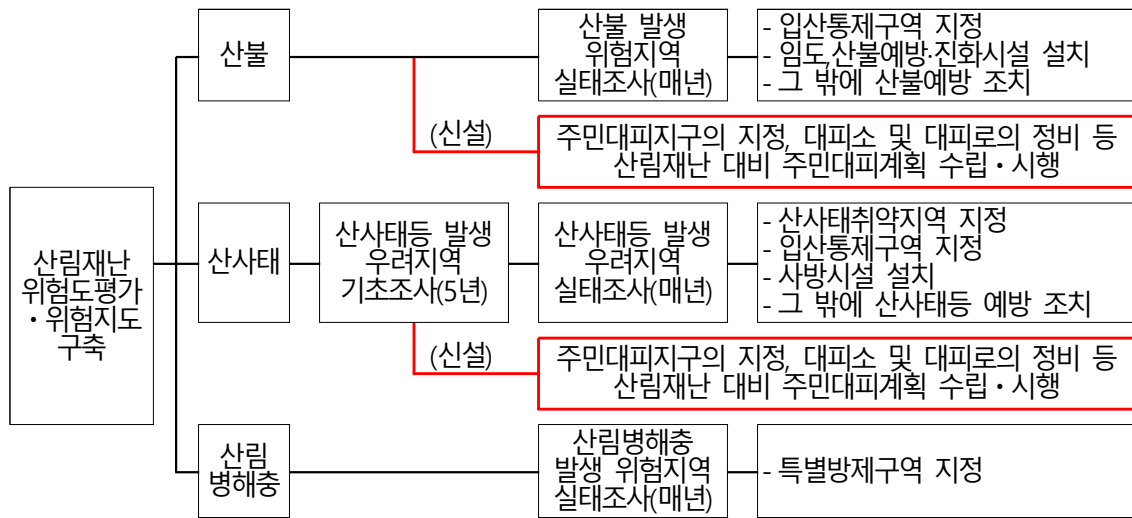
주민대피를 위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법률에 규정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와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을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이용하여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⁸⁾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게 됨.

8) 「산림재난방지법」 제9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위험지도)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이용하여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는 산림재난별로 실시 및 제작할 수 있다.
⑤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의 기준·방법·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산림재난별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산림청은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한편, 유사입법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관한 조문이 있음.

【 유사입법례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시·도지사등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등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지침의 배포,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평가·점검·포상 등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교환 범위 확대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입목·죽을 포함)나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산사태취약지역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닌 ‘토지’로 매수·교환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교환)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u>산지(입목·죽을 포함한다)</u>나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교환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교환) ① ----- ----- ----- ----- ----- ----<u>토지(산지의 입목·죽을 포함한다)</u>----- ----- ----- ----- ----- ----- ----- -----

현행	개정안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시행예정법률은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⁹⁾ 그 결과 붕괴·침식·균열 등으로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⁰⁾¹¹⁾

9)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등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조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한정한다.

1.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변경·고시 및 해제
2.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3.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0)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국유림의 경우 지방산림청장을 말하며, 공유림·사유림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붕괴·침식·균열 등으로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⑦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변경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⑧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제6항에 따라 지정·변경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설치사업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11) 참고자료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현재(2024년말 기준)까지 31,345개소 지역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었음.¹²⁾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현황('24년말 기준) 】

(단위 :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31,345	439	359	356	134	113	531	1,005	122	2,396	3,178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북부청	동부청	남부청	서부청	중부청
2,182	1,990	2,576	2,278	6,142	2,555	1,410	1,001	1,012	753	813

※ 주: 참고로 위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지만을 포함함.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후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을 조사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토지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료: 산림청

토지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에 사방시설이 설치되는 등의 조치로 인하여 재산권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바¹³⁾,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나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⁴⁾.

12) 참고로 지정경과는 다음과 같음.

(¹²초) 390개소 → ('17) 24,075 → ('22) 27,400 → ('23) 28,988 → ('24) 31,345

13) 「산림재난방지법」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14) 「산림재난방지법」 제2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교환)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즉,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이 산림과 연접한 토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매수·교환의 범위를 토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산사태취약지역의 매수·교환의 범위를 산지에서 ‘토지’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시행예정법률 조문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입목·죽을 포함한다)나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교환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산림재난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6조)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 ② (생략) <u><신설></u> ③ · ④ (생략)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u>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방지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산림재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단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단원 등에게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⁵⁾

15) 「산림재난방지법」 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산림재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되는 상황에서¹⁶⁾, 산불 진화의 초기 지휘권자이자 대피명령¹⁷⁾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산림재난 관련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여¹⁸⁾, 이에 따라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1.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2. 교육의 내용·방법·대상·기간 등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2.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

3.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단원

4.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단원

5. 그 밖에 국민 또는 산림재난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 기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 안전기술공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 교육의 내용·기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6) 연평균 산불피해 면적 : ('16~'19년) 1,502 → ('20~'24년) 6,702ha

연평균 산사태피해 건수 : ('16~'19년) 651 → ('20~'24년) 2,232건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① 지방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행예정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 의무를 추가하기보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존 교육에 산불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나. 제37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

2.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횟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참고 1

산림재난방지 인력 현황

구 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목적	산불예방 및 봄·가을 산불조심기간 시 현장 투입·산불진화, 잔불 정리	국가 주요시설 피해 우려지, 험준지, 야간산불 등 열악한 산불현장에 투입되어 산불 조기진화 및 확산저지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및 피해예방 조치 산사태 발생지 현지 확인 응급복구 지원	산림병해충 예비관찰 및 발생조사, 돌발병해충 등 발생지 긴급방제
시작연도	'03~계속	'18~계속	'13~계속	'09~계속
인원('24)	총 9,604명 국가 1,405명 지자체 8,199명	총 495명 국가 495명	총 760명 국가 108명 지자체 652명	총 1,500명 국가 328명 지자체 1,172명
사업기간	180일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연중 (공무직)	150일 (여름철재해대책기간 5월~10월)	10개월
근무현장	전국 주요 산림	전국 주요 산림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	병해충 발생지역 중심

참고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①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산림청)	○ (목적) 기초조사 대상지 선정 ○ (내용) 산사태위험지도(매년 산림내 변화사항(임도,목재수확,전용 등) 반영하여 현행화), 토석류피해예측지도, 수치지형도, 임상도, 지질도 등 공간정보 분석하여 위험도와 피해도 고려하여 생활권 우려지역 선정
②기초조사 (산림청)	○ (목적) 1차적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대상지를 선정 후 조사하여 "실태조사 필요지역" 추출 ○ (내용) 위치, 규모, 산사태 발생 유형 분류 ○ (조사자) 산사태관련 전문기관 등이 수행(경쟁입찰, 단가:18.8만원/개소)
③실태조사 (시군구, 지방산림청)	○ (목적) 지자체, 지방청에서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실태조사 필요지역"에 대한 정밀한 현장조사 실시 (기초조사 후 60점 이상 지역) ○ (내용) 토석유출·붕괴·침식 정도, 토지·산림 현황(A, B, C등급으로 분류) - 산림·입지 현황도 및 주민 대피경로 등 분석·작성 - 사면안정해석 및 토석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피해예측 ○ (조사자) 산사태관련 전문기관 등이 수행(경쟁입찰, 단가:70만원/개소)
④지정예정지 열람 공고	○ 사전협의 절차를 위한 열람 공고(관보, 공보, 시군구 홈페이지, 소유자 등) - 실태조사 후 A,B등급으로 판정된 곳을 공고(30일) - 지정사유, 소재와면적, 이의신청기간, 지정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 구비 * 지정예정지의 지형도(또는 지적도)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⑤이의신청	○ 열람 공고 기간내(30일 이상)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이의 신청 접수
⑥지정위원회 심의	○ 재난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심의 ○ 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반영 - 토지소유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 출석시켜 의견청취 가능 ○ 안전심의 결과(가결 또는 부결)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알려야 함
⑦이의신청 결정통지	○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통지
⑧지정·고시	○ 이의신청 결정통지 후 지정고시(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내용) 필지별 내역(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토지소유자, 지정구역, 도면 등,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방법) 관보, 토지e음(국토부), 공보, 각 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정보지 등
⑨관리	○ 우선적인 사방사업의 실시, 연 2회 이상 현지점검 ○ 유사시 주민 대피체계 등 경계피난 대책 마련
⑩해제	○ 지정목적 달성시 해제 가능(위험요인 제거, 인명피해 우려 해소 시) ○ 피해발생 여부 조사(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후 10년, 사방사업 시행 후 5년), 사면안전해석, 토석류 시뮬레이션 수행 등 해제 평가 후 지정위원회 심의로 결정